

제 805 호  
1980.10.24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박 종 우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 차 례

### ◎ 요 시

제 349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적승인.....	3
제 350 호 :	1980 년도제 1 회서울특별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3
제 351 호 :	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실효.....	4
제 352 호 :	도시계획시설변경 ( 재지 ) .....	4
제 353 호 :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고시.....	5
제 354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실시계획인가고시.....	5
제 355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및변경.....	7
제 356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7

### ◎ 공 고

제 312 호 :	도시계획사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실시계획변경공람 공고.....	9
-----------	---	---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313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	9
제 315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완료공고 .....	10
제 316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	10
제 318 호 :	도시계획사업 ( 소매시장 ) 시행허가준공 .....	11
제 558 호 ( 도봉구공고 ) :	동사무소이전공고 .....	11
제 72 호 ( 은평구공고 )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	12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4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09 (80.3.27)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기.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통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10. 20.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유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12	12	관악봉천 179	관악봉천 180	가각정리

\*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0 호

1980년도제1회서울특별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 1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회계명	예산액	회계명	예산액
일반회계	461,382,24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51,000
국민주택비특별회계	62,454,000	재해구호비	1,065,000
주택재개발	20,246,000	수도사업비	83,469,000
토지구획정리비	44,920,000	지하철운수사업비특별회계	107,440,000
하수처리장비	4,187,000	병원사업비특별회계	5,529,000
유도도로비	4,780,000		

1980. 10.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서울특별시고시제 351호**  
 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실효

1. 건설부 고시 제 285호 (78.9.26)로 지정된 다음 재개발구역은 재개발구역시효가 단로되어 실효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4조 건설부 고시 제 463호 (79.12.10)건설부장관

권한위임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건축국 재개발 1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0. 10. 21.  
 서울특별시장

가. 실효내역

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결정근거고시	비고
실효	명동2가구역	중구명동 2가; 중무로저동 각일부	95,850㎡	건설부고시제 285호 (78.9.26)	
	■ 신문로2구역	중로구신문로 1, 2가일대	72,251㎡	"	
	■ 남대문로 5가구역	중구남대문로 5가 12, 17, 19, 20번지일대	50,248㎡	"	
	■ 봉래동	중구봉래동 58, 69, 88번지일대	35,187㎡	"	

나. 도 면 : 별첨 (건축국재개발 1과 비치)

**◎ 서울특별시고시제 352호**  
 도시계획시설변경 (폐지)

1. 건설부 고시 제 131호 (76.8.21) 및 서울시 고시 제 256호 (76.10.2)의 관련임.

2. 영등아파트지구 (4-2지구)내 강남구 청담동 262 부락내의 도시계획시설은 (아동공원) 다음과 같이 이를 폐지한다.

198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아동공원	영등1-4주구	1,000	
변경	.	.	0	폐지

도시계획시설변경(폐지)조서

가. 시설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아동공원	영등4-2주구 (262부력)	1,000	
변경	.	.	0	폐지

나. 변경사유: 도시계획법 제 2 조에  
 의거 동 단지내의 기도사계획 시  
 설로 결정된 아파트 기본 계획상  
 의 아동공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 조의 규  
 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시 일정  
 규모(100세대까지 330㎡초과시  
 세대당 3.3㎡) 이상의 어린이놀이  
 터를 시설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중복사항이므로 단지내 어린  
 이놀이터 시설 기준 면적에 의  
 거 대체 시설요청하여 차기사업분  
 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기준  
 면적에 의거 추가 시설요  
 청함.

○서울특별시고시제 353 호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  
 지정고시

문화재 보호법 제 54 조의 2 및 서  
 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  
 방문화재를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지  
 방문화재 보호 조례 제 8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7 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한다.

1980. 10. 23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점목록

종별및지정번호	명 칭	수량	소재지	소유자	비고
지방유형 문화재	제 44 호 상봉동(사)충석탑	1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상봉동344-1	한독약품 공업 (주)	
"	제 45 호 상봉동석제태실 신석	"	"	"	
"	제 46 호 상봉동석등 (하대석)	"	"	"	하대석이외 부분제의
"	제 47 호 상봉동전수덕사 사리함	"	"	"	상륜부제의

○ 서울특별시고시제 354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8 ( 80.6.16 ) 호로 지적 고시된 당구 방학동 314-7 의 31 필지에 대한 방학초, 중학교분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 79.12.10 ) 호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살과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재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10. 2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방학동 314-7 의 31 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 계획 사업 ( 학교 ) 방학국민학교 방학중 학교

다. 사업의규모 및 면적 : 20,602 제

라. 사업시행자주소 설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장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연월일 : 시행인가후

2) 준공연월일

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생략 )

사. 토지소유자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

계인의 주소 설명

( 별첨생략 )

◎ 서울특별시고시제 35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0.25  
서울특별시장

0.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1	190 m	풍납동 237-4	풍납동 442-1	
"	"	2	320 m	" 442-1	" 330	
폐지	"	3	110 m	"	"	
기정	"	"	90 m	홍계동 274	홍계동 273	
변경	"	"	90 m	"	"	육원일부조정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49 호 (80.7.4)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고 제 66 호 (80.7.10)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동대문구 면목동 481 번지의 12 필 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별 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0.  
서울특별시장

<p>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481번지의 12 필지</p> <p>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 학교, 면목중학교 신설 )</p> <p>다. 사업의규모 및 면적</p> <p>1) 면 적: 17,689 m<sup>2</sup></p> <p>2) 교사 및 부대시설: 교사 1동 (55 교실) 및 부대시설의 설치</p>	<p>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p> <p>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p> <p>1) 착수일: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p> <p>2) 준공일: 착수일로부터 2 년 이내</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3항의 관계인의주소, 성명</p>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판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동대문구 면목동	481	답	1,458m <sup>2</sup> - 831m <sup>2</sup>	충정로1가54	이경만		
"	480-2	전	2,664m <sup>2</sup> -2,413m <sup>2</sup>	면목1143	지속석		
"	478-2	대	304m <sup>2</sup>	" 478	정호영		
"	57-7	대	953m <sup>2</sup>	"	"		
"	산31-5	임	9,620m <sup>2</sup> -4,179m <sup>2</sup>	필동2가!24-10	양건석		
"	480-3	전	3,028m <sup>2</sup>	면목1139	손관수		
"	480-1	"	797m <sup>2</sup>	금호3668	김병태		
"	480-6	"	99m <sup>2</sup>	면목480	정용순		
"	83	과수원	712m <sup>2</sup> - 706m <sup>2</sup>	면목1142	김성기	면목!14-2	김주형
"	1332-2	구	706m <sup>2</sup>		서울특별시		
"	480-5	전	182m <sup>2</sup>	면목1143	지속석		
"	83-1	과수원	3,688m <sup>2</sup> -3,470m <sup>2</sup>	면목1142	김성기	면목114-2	김주형
"	511	전	21m <sup>2</sup>	면목1142	"	"	"
	계	13 필지 17,689m <sup>2</sup>					

사. 사업계획서 (도면) 첨부: 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312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외주택지조  
성사업) 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270 호(79.6.25) 387 호(79.9.4) 35 호(80.2.4)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구기동 도로 및 외교관공판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일 442-690 (80.9.10) 호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기 본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도시계획법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코자 공고함.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재산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0.16

서울특별시장

○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 (구기동 외교관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위치 : 구기동158번지일대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79.4-80.2.29

변경 79.4-80.

5. 지원조서 (관, 향, 목) : 공익사업비 도시계획, 종합계획, 시설비
6. 공고기간 : 80.10.16-80.10.29
7. 가. 사업비 : 총 1,799,149,383 원  
공사비 : 540,462,383 원  
보상비 : 1,248,687,000 원
- 나. 토지이용현황 :  
총면적 : 12,604.8 평  
면적 : 7,588.5 평  
도로 : 3,478.8 평  
급원 : 508.5 평  
댐프장 : 516.0 평  
주차장 : 513.0 평

○ 서울특별시공고제 313 호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제 256 호(80.9.9)로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한 영동제 2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변경 지정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본사실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지한다.

1980.10.18

서울특별시장

환지에정지 변경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 2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내역 : 8,615.9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청담동 327 외 18  
 의 20 필  
 (도서는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315 호

도시계획 사업(학교)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506 호(79.12.6)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된 강남구 방배동 산 23-10 일대 신방배국민학교에 대하여 공사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79.12.10)에 의거 이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0.21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방배동 산 23-10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신방배국민학교
- 3) 사업시행면적 : 11,827㎡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1 사업시행기간 : 1979.12-1980.8.5

6) 준공도면 : 별첨 현황축량도 및 설계도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316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제 254 호(80.8.8)로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한 천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55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구획정리과와 강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한다.

1980.10.24

서울특별시장

( 환지에정지 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천호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1,002.7 평  
 다. 변경위치 : 강동구 길동 422 외 3 의 5 필

◎서울특별시공고제 318 호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 시행허가준공

1.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소매 시장 부지조성 사업의 준공은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제 57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79.12.10)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0.25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정동 201-1, 2 호

2. 사업명: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

3. 준공면적: 2,148㎡ (649.77평)

4. 사업시행자: 강서구 신정동 201-1 신명실업주 대표이사 이동현

5. 사업기간: 착공: 80.7.3 준공일: 80.10.25

6. 허가번호및일자: 서울특별시고시 제 130 호(80.4.14)

7. 준공도면: 별첨도면(생략)

◎도봉구공고제 558 호

농사무소이전공고

관할 농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 이권하였기 공고함.

다 음

종 명	전 소 제 지	이 권 장 소	이 권 일 시
월계계 2 동	월계동 460-16	원계동 630-2, 629-3	80.10.11
공릉계 2 동	공릉동 408-4	공릉동 221-3, 411-13 412-1	80.10.11

1980.10

도봉구청장 유 중

◎은평구공고제 72호

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개작 사용승인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80.10.1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 인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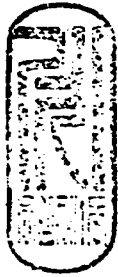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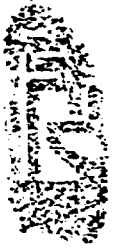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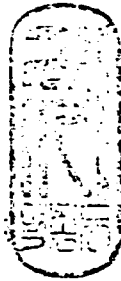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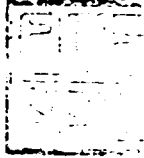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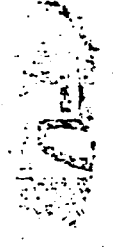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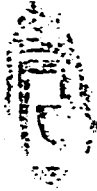

- 불광1동장직인 및 직인
- 불광2동장 직인
- 갈현동장 직인 및 직인
- 대조동 직인
- 응암1동 직인
- 응암2동장 직인 및 직인
- 역촌동장 직인 및 직인
- 신사동장 직인 및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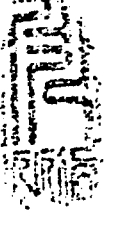
2. 사용개시일시 : 1980.11.1.09:00

3. 공인의인명 : 다 음

공 인 의 인 명

개 작 된 인 명				
폐 인 된 인 명				
구 분	불광 1 동장인	불광 1 동계인	불광 2 동장인	갈 현 동 장 인

개 작 된 인 영				
폐 인 된 인 영				
구 분 공 인	갈 현 동계 인	배 조 동계 인	용 암 1 동계 인	용 암 2 동계 인
개 작 된 인 영				
폐 인 된 인 영				
구 분 공 인	용 암 2 동계 인	역 촌 동계 인	역 촌 동계 인	신 사 동계 인

개 작 원 인 영				
공인 구분	신사동계인			
폐 인 원 인 영				
공인 구분	신사동계인			